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분만 의료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로 신속히 해결하세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국가와 의료인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의 바로미터(BAROMETE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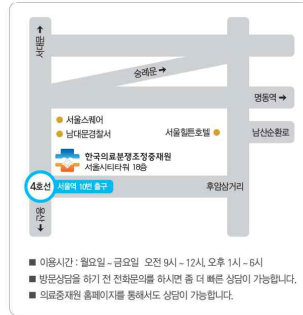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환자과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법조계 보건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감정 및 조정·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이내 신속한 조정·중재는 물론 손해배상금 대불도 보다 확실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전문성	법조계 보건의료계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유기적 업무수행
신속성	의료분쟁 해결의 핵심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시스템



함께 물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www.k-medi.or.kr
의료분쟁 무료상담
1670-2545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0층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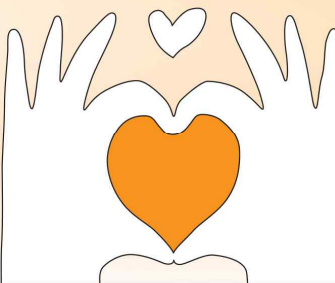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 사고에 대하여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사망 ■ 분만 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적용 기준	2013년 4월 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청구 시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청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대불심사팀) 방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신청
청구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자격: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변호사 등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
불의의 분만 의료사고에 국가와 분만 의료인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절차

01. 분만 의료사고 조정·중재 신청

분만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또는 의료인 누구나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요건과 신청의 절차 참여 등 의사 본적역으로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팩스
- 구비서류: 조정·중재신청서, 본인증(환자/주민등록증 등), 조정신청 전술서 등



02. 분만 의료사고 감정

의료사고감정단이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한다.

- 의료사고감정단(명): 분야별 전문의(외, 결·연사 등 법조인), 소비자관련 대표제(학계, 연구기관 교수)



03. 보상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사고 감정서를 토대로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명): 판사 등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관련 대표제(학계, 연구기관 교수)



- 의료인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절차 진행
-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 조정·중재 절차 진행

04. 보상 청구

피해자는 보상 청구 가능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 의료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의료사고 보상 청구서,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보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등



05.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분만 관련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명): 실무인과 전문의(외, 소비자관련 대표제, 의료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06.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결정시 피해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 보상 금액: 최대 3,000만원 이내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개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사고 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제도 이용 의뢰기관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 보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중재가 나타날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저 또한 의료현장에서 수차례 아이를 받아 보았지만 종종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일었고 이 과정에서 종종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번 불가항력적인 산생아 사망지도 환자에게 이진을 줄지 못해 많이 힘들었지만,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내에 환자에게의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내가 행한 의료행위가 어떤 수 없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사건의 막을 방법이 없지만, 사고 후의 대처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한 해결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되니 위안이 됩니다

제도 이용 환자

결혼 후 첫 아이 임신 진단을 받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임신 38주 병원에서 태아의 과체중으로 인한 '어두컴컴한갈색'이 예상되며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권유하였고, 저는 의료진의 말을 믿고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 건강할 상태였던 아이가 출생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고, 제 아이의 사망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의료진이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명백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아이의 사망원인이 '산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이라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밝혀져 보상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만 짧은 시간에 제 아이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었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료인에 대한 원망도 점차 줄어들어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